3. 賃貸住宅의 標準賃貸保證金 및 標準賃貸料

建設部告示 第1994－359號 1994. 9. 27

1. 종전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관한 고시(건설부고시 제203호, 제568호, 제1992－474호, 제1993－399호)는 임대주택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본다.

   다만, 국가·지방자치단체·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아닌 자가 건설·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위 고시금액의 100분의 1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는 입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며,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한국주택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을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나의 손은 정밀시공 나의 눈은 품질관리